

#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2. 세 출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1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1억 1천 9백만원 대비 2.4%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118,889	2,118,889	2,169,264	50,375	50,375	2.4	2.4	
행정 관리	소 계	2,118,889	2,118,889	2,169,264	50,375	50,375	2.4	2.4
	행정운영경비	539,954	539,954	541,454	1,500	1,500	0.2	0.2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1,578,935	1,578,935	1,627,810	48,875	48,875	3.1	3.1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118,889	2,118,889	2,169,264	50,375	50,375	2.4	2.4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25,400	125,400	205,400	80,000	80,000	63.8	63.8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41,200	41,200	10,075	△31,125	△31,125	△75.5	△75.5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21,051	321,051	322,551	1,500	1,500	0.5	0.5

## II. 검토의견

### 1. 세출예산 검토

-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6천 9백만원으로, 지정 예산 21억 1천 9백만원 대비 2.4%(5천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0만원)”와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사무관리비’ 8,000만원)” 등 증액 2건과 인권담당관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사무관리비’ 3,100만원)” 감액 1건 등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118,889	2,118,889	2,169,264	50,375	50,375	2.4	2.4	
행정 관리	소 계	2,118,889	2,118,889	2,169,264	50,375	50,375	2.4	2.4
	행정운영경비	539,954	539,954	541,454	1,500	1,500	0.2	0.2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1,578,935	1,578,935	1,627,810	48,875	48,875	3.1	3.1
교 부 금	-	-	-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2,118,889	2,169,264	50,375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25,400	205,400	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대내외 청렴 인식개선 사업 전개, 청렴 반부패 시책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li> <li>◦ 사무관리비(39,000천원→119,000천원)</li> </ul>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41,200	10,075	△3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용역 추진 방식에서 자문단을 활용한 직접개발로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감조정</li> <li>◦ 사무관리비(41,200천원→10,075천원)</li> </ul>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21,051	322,551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가 편성</li> <li>◦ 직책급업무수행경비(31,800천원 →33,300천원)</li> </ul>

## 가.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

○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 증액은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2024.7.1.)으로 ‘청렴담당관’이 신설되고, ‘인권담당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증액(150만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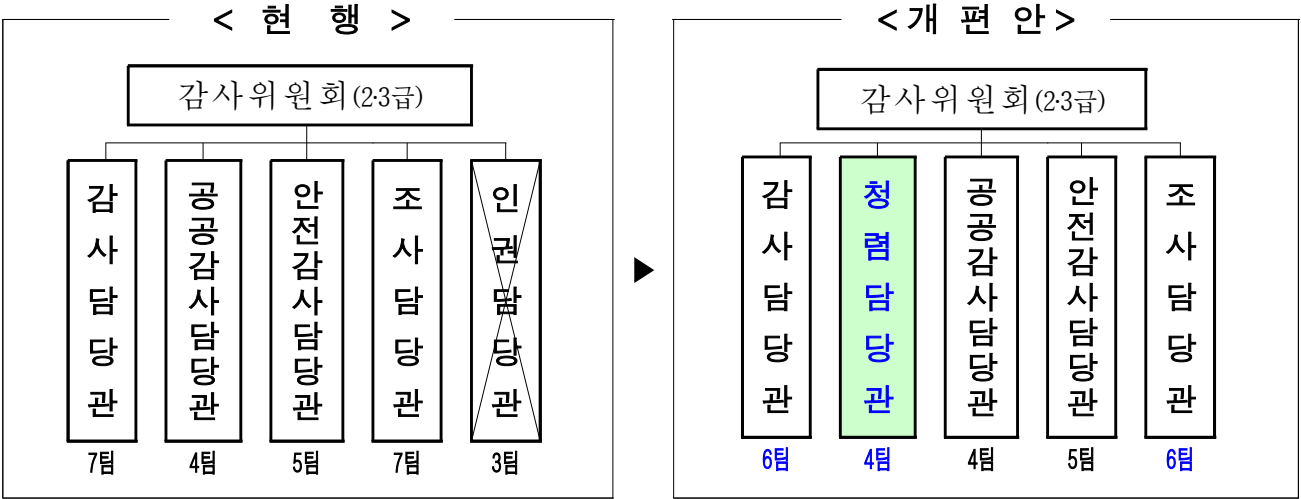
※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기본경비에 편성함.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세부산출기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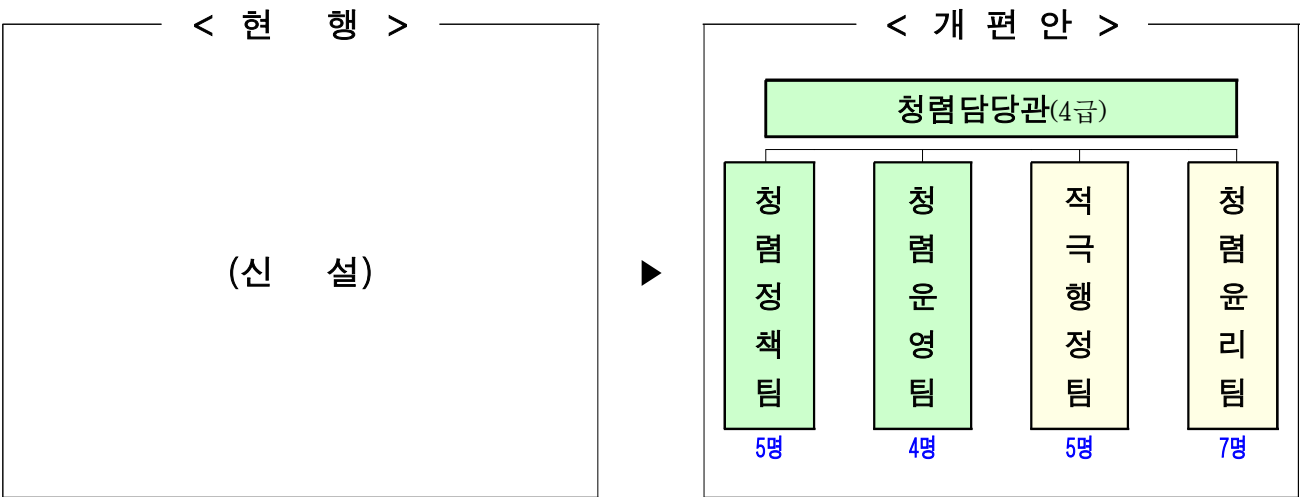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500,000원	=	1,500천원
	•2~3급 기관장		
	75,000원*1명*12월	=	900천원
•4급 보조기관			
100,000원*1명*6월	=	6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장(2~3급기관장, 75천원*12월 과소편성분): 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2~3급 보조기관으로 편성(월 900천원)하였으나 감사위원장은 2~3급 기관장(월 975천원)에 해당하여 과소편성분 증액 편성 필요</li> </ul> </li> <li>○ 청렴담당관(4급보조기관, 100천원*6월): 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담당관 기존 편성분 월 350천원 중 100천원 이체(4·5급 보조기관) 후 부족분 월 250천원 편성 필요</li> </ul> </li> </ul>
--	---

**< 감사위원회 조직개편안(2024.7.1. 시행예정) >**



**< 청렴담당관 신설 >**※ 신설 → 1담당관 4팀 22명 (+1담당관 +4팀 +22명)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370호, 일부개정·시행 2024.3.29.) 개정에 따라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로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의 설치 자율화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98)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2024년 5월 3일 원안가결 되어 7월 1일 시행예정임.

- 다만, 감사위원회는 분산된 청렴·윤리 업무를 ‘청렴담당관’ 소관으로 일원화 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청렴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 인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과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정책목표처럼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은 청렴교육, 하정 청백리상 및 청렴 홍보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청렴담당관’ 신설로 다양한 대내외 청렴 인식개선 사업 전개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렴·반부패 시책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를 이유로 기정예산 1억 2천 5백만원 대비 61.0%(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05,400	125,400	80,000
사무관리비	119,000	39,000	80,000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500	0
포상금	6,900	6,900	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50,000	0

###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40,000,000원	=	40,000천원
	○반부패·청렴 컨설팅 추진 20,000,000원*2회	=	40,000천원

	증감사유
	다양한 대내외 청렴 인식개선 사업 전개, 청렴반부패 시책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2002년에는 종합청렴도가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이었고, 2023년에도 종합청렴도가 3등급(청렴노력도가 전년(2등급)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으로 전년과 같은바,<sup>1)</sup>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반부패·청렴 컨설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

구 분	2022년	→	2023년
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4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		3등급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는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하고, ‘청렴체감도’는 외부 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 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 부패실태 감점(10%+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먼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캠페인’을 위한 5천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청렴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1천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

1)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12., 118면 참조.

〈 2023년 본예산과 2024년 예산(안)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 90,000천원	○ 사무관리비 = 39,000천원
	- 청렴교육 강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5,000,000원*1회 = 25,000천원	- 청렴교육 강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5,000,000원 = 25,000천원
	- 청렴캠페인 홍보물 제작 1,000,000원*10회 = 10,000천원	- 청렴 홍보물, 인쇄물 제작 등 1,000,000원*4회 = 4,000천원
	- 직원대상 청렴교육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직원대상 청렴교육 10,000,000원 = 10,000천원
	-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캠페인 10,000,000원*5회 = 50,000천원	
증감사유		
○ 내실 있는 청렴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예산 증액(5,000천원) ○ 청렴캠페인 홍보물 제작 규모 축소(△6,000천원)		

〈 청렴캠페인 개요 〉

- **운영목적** :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인식 개선 및 내실화
- **홍보방안** : 출근길 청렴 캠페인 추진 및 청렴굿즈 배포, OX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 진행, 청렴 주제 공모전 개최 등
- **홍보기간** : 연중 상시 추진
- **제작물품** : 청렴 굿즈(헤치 인형), 부채 등 소모품 등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6월 3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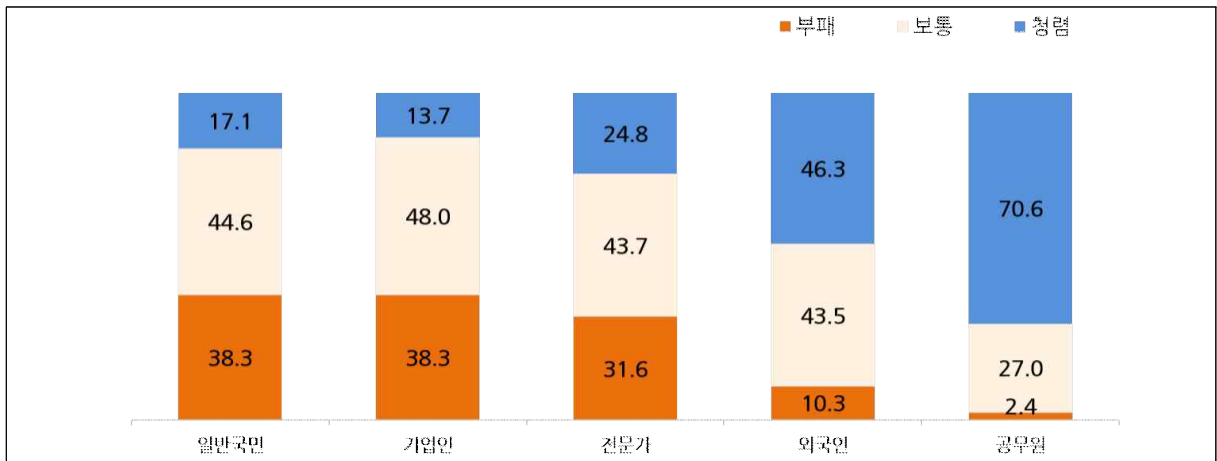
-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다시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청렴문화의 확산은 장기적·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본 추경으로 시행될 사업의 철저한 사전조사 시행여부, 확실한 결과의 도출 가능성, 시급성·긴급성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감사위원회는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소요를 정확히 반영한 예산편성 노력을 통해 불가피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반부패·청렴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바, 이는 외부 반부패·청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을 통해 “서울형 정책개발”로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인식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일반 국민의 38.3%가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라고 응답하고 있는바,<sup>2)</sup>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서울 시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16일자 보도자료 재인용.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2024년 1월 16일자 참조.

- 다만, 청렴컨설팅 의뢰 후 분석결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추진 일정에서도 청렴컨설팅 결과에 따른 청렴도 향상 및 정책 자료 활용은 2024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바, 3분기에 청렴도 향상 및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청렴컨설팅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와 컨설팅 결과가 실제로 올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 컨설팅 결과가 금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청렴컨설팅 개요 〉

- 사업기간 : '24. 7월 ~ 9월 (3개월)
- 주요내용 : 청렴인식 개선 맞춤형 정책개발, 청렴도 향상방안 등
  - 청렴문화 정착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서울형 청렴·반부패 정책 제시
  -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도 평가 대응(권익위 평가지표)
- 추진방법 : 외부 반부패·청렴 전문기관 수행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6월 3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아닌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청렴도 평가 대응” 또는 “청렴도 평가 결과 수치의 상향”이 본 사업의 목적일 경우 본 사업 추진의 적정성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은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여 인권 실현에 최적화된 인권 정책 추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기존 용역 추진 방식에서 자문단을 활용한 직접 수행으로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용역 예산 미집행 예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3천 1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075	41,200	△31,125
사무관리비	10,075	41,200	△31,125

###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인권영향평가운영 용역 △38,000,000원	=	△38,000천원
	○자문단 운영비(인권영향평가)	=	4,675천원
	-회의 참석 수당 200,000원*6명*4회(소요액)-200,000원*4명*4회(예산액)	=	1,600천원
	-서면 자문 수당 100,000원*6명*4회	=	2,400천원
	-운영비 675,000원	=	675천원
	○자문단 운영비(인권경영평가)	=	2,200천원
	-회의 참석 수당 200,000원*5명*1회	=	1,000천원
	-서면 점검 수당 100,000원*5명*1회	=	500천원
	-현장 점검 수당 200,000원*3명*1회	=	600천원
	-운영비 100,000원	=	100천원
	증감사유		
	○ 기존 용역 추진 방식에서 자문단을 활용한 직접 수행으로 사업 방식 변경 (△31,125천원)		
	-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비 감액 (△38,000천원)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평가 자문단 숫자 및 횟수 등 증가로 인한 증액(6,875천원)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 개선방향 〉

구분	2023년	2024년
정책사업	▶ 정책사업 점검표 용역 개발 - 재난/안전, 보건/건강 분야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개발	▶ 정책사업 점검표 자체 개발 - 일반행정(감사), 일자리·경제 분야 점검표 개발 추진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건축시설물	▶ 인권지킴이단 점검표 개발 활용	▶ 인권지킴이단 점검표, 인권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자치법규	▶ 인권담당관 일괄 평가 후 통보 - 인권담당관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평가 진행('20년~'23년)	▶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중단 - 입안점검표,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과 중복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6월 3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이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을 당초에는 용역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용역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
  - 감사위원회는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소요를 정확히 반영한 예산편성 노력을 통해 불가피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권영향평가는 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시민 인권에 미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한 점검표 자체 개발을 통해 직접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면 및 서면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5명 내외의 자문단을 통해 점검표 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될지 여부, 결국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초부터 불필요한 용역비 편성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실시

- (인원) 5명 내외
- (기간) 2024년 인권영향평가 사업 종료 시까지
- (구성) 인권영향평가 관련 경험 및 역량이 있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그 밖에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운영) 대면 및 서면 형식으로 탄력적 운영
- (역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자문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6월 3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음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4년 인권영향평가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 마련 후 자문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위원회 근거 조례 제정 전에 T/F(Task Force)형 자문단 운영가능하며, T/F형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방침에 명시하여 운영 후, 해당 기간 내 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신설을 검토해야 함(서울시 조직담당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2018.9., 11면 참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